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출석 외국인 증인 입국금지〉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69호)

2026.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전용기 · 박정현 · 김영호 · 박홍근 · 민병덕 · 박선원
한민수 · 김남희 · 정준호 · 박해철 · 최혁진 의원
(11인)

2. 제 안 일 : 2025. 12. 16.

3. 회 부 일 : 2025. 12. 17.

※ 의안번호 : 1526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쿠팡, MBK 파트너스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영주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 국회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외국인 신분이나 해외 거주를 핑계로 출석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동행명령의 집행이 불가능하고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범의 사각지대’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는 성실히 국회의

요구에 응하는 내국인 기업인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임.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결로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국회의 권위를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외국인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결로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증인의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외국인 증인에 대한 입국금지)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외국인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증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1조 및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¹⁾

1) 「대한민국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법」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의무를 지는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행명령 대상이 되고,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때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²⁾

이와 같이 국회에 증인 출석 요구권을 부여하고 증인에게 출석의무를 부과하면서 불출석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재정·국정통제 등에 관한 전반적인 국회 기능이 적정하고 실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음.

한편, 위원회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외국인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사례는 다수 존재하는데, 해당 증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한 사례도 있는 반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례도 있음.³⁾⁴⁾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외국인 증인이 출석한 사례]

- 제20대국회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웨이코리아의 5G 보안 점검과 관련하여 명사오원 한국화웨이 지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켰음.
- 제21대국회 2023년도 정부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소비자 비용 부담 및 이용 불편 문제와 관련하여 마크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켰음.
- 제21대국회 2023년도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활용품 판매와 관련하여 산디판 차크라보티 쿠팡CPLB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켰음.

개정안은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동행명령의 집행이 불가능하고 해외 체류 시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불출석한 외국인인 증인의 입국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인 증인의 출석 의무 이행을 강화하여 국회의 권위를 제고하고 입법·국정통제 등 국회 기능의 실효적 수행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외국인인 증인에 대한 입국금지 규정이 출석 의무 이행 강화라는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인지 및 「출입국관리법」과의 균형 등을 면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란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영역으로 들어오려는 외국인에 대하여 공항만에서 그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국가적 행위를 말하고, 「출입국관리법」 상으로는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함.⁵⁾

[외국인 증인이 불출석한 사례]

- 제19대국회 2012년도 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거라브제인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 대하여 10월 8일 출석할 것을 의결하였으나 불출석하였으며, 10월 16일에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불출석하였음.
- 제19대국회 2014년도 국방위원회는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영함 납품비리와 관련하여 브라이언 강(강덕원) GMB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불출석하였음.
- 제19대국회 2015년도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맹본부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한국피자헛유평한회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불출석하였음.

4) 다만, 외국인인 증인의 국내·국외 체류 또는 거주 여부는 파악하기 어려움.

5) 조국현,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제3판), 2025, p.140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국의 자유의 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⁶⁾ 법무부장관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⁷⁾ 특정 입법 목적 또는 정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① 불출석한 외국인인 증인에 대한 입국금지가 외국인인 증인의 출석 의무 이행 강화라는 개정안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인지, 보다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증인의 원격출석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에서도 원격지의 증인을 출석시켜 국정감사를 실시한 사례⁸⁾가 다수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먼저 증인의 원격출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증인의 출석 편의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외국인인 증인의 출석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어 보임.⁹⁾

6) 참정권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청구인 설○혁등이 주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입국의 자유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1헌마502 결정).

7) 조국현,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제3판), 2025, p.141

8) 2005년 9월 23일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2006년 10월 19일 및 2007년 10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2016년 10월 7일 및 2017년 10월 26일 정부위원회 국정감사, 2020년 10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2021년 10월 21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등(국회사무처, 「국회선례집」, 2024, pp.859~863)

9) 참고로, 본회의나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질병이나 중대한 신체 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국회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준하는 사유로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영상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3213호)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임.

또한, ②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사유로는 ㉠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이 있음.¹⁰⁾

개정안에 따른 입국금지 사유인 증인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불출석

10)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 가. 일본 정부
 -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1(외국인의 입국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사유에 포섭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¹¹⁾

참고로,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사유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 심사 시 그 심사결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¹²⁾

둘째, 개정안은 외국인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을 입국금지 요청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음.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동행명령에 관한 규정인 제6조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불출석 등의 죄에 관한 규정인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³⁾

11) 입국금지 사유는 강제퇴거 사유에도 해당함.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12) 불출석 증인 입국금지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연 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5267	전용기의원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국금지 사유에 추가

1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참고로, 법원은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이유’의 의미에 대하여, ① 당사자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수배 중에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 증인으로서 출석하는 것 자체만으로 당사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가 발생될 위험이 있는 경우, ② 질병, 국외 거주나 출장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부재, ③ 증언일시와 양립할 수 없는 공적 활동에 관련된 일정, ④ 처벌할 수 없는 법률의 착오 등 증인이 불출석할 수밖에 없음이 그 사유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거나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불출석을 정당화시킬 만큼 중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음.¹⁴⁾

이에 따른다면, 외국인인 증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외국인인 증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요건을 명시할지 여부, 정당한 이유의 의미 또는 판단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셋째, ①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주체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법무부장관의 조치 결과 보고 객체는 ‘국회’로 규정하고 있어, 입국금지 요청 주체와 조치 결과 보고 객체가 서로 불일치하므로, 위원회가 입국금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서울지방법원 2006. 9. 20. 선고 2005노3760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고단4704 판결

또한, 개정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 공포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¹⁵⁾는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표-2] 개정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국금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외국인 증인부터 적용한다.

문 의 처

02)6788-5017

15)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